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07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등	3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0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채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납자에 대하여 채납 원인·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채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하여 채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채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판

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적용을 해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16조의7 신설, 제277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 마련(제44조의2) ○ (대상 및 요건) 관세를 체납한 납세 의무자로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그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실태확인)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신설 * 실태확인 방식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 행위 ○ (실태확인원) 효율적인 실태확인 수행을 위한 실태확인원 채용 - 실태확인원(실태확인원이었던 자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 <신 설>	☐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77조의3) -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및 목적 외 용도 사용의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 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혜택 배제 등 제재 강화(제116조의7) ○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제116조의2 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법인은 제외) ○ (소액면세 배제)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미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발급 제한 및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 ○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한 고액·상습채납자명단 통보 및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 요청 ○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탁송품 수입신고 생략 미적용 ○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 적용례: 제116조의7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채납자부터 적용
--	---

* 차규근의원안 2026. 4. 24. 발의(의안번호 18607)

가. 개요

- 개정안은 관세 등의 채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①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채납된 관세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납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의 신설 및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② 국세, 지방세, 관세의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소액면세 등의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임.

- 5년간(2021-2025) 체납액 통계를 보면 국세와 관세 모두 체납액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체납 관련 통계(국세, 관세)]

(단위: 억원,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세					
세수총계	3,344,714	3,842,495	3,356,723	3,283,896	3,650,519
체납액 규모 ¹⁾	998,607	1,025,140	1,060,597	1,107,310	1,140,969
체납액 정리 실적	164,592	174,175	205,233	209,400	197,016
고액채납자 신규공개자	7,016	6,940	7,966	9,666	11,009
고액채납자 신규체납세액	53,612	44,196	51,313	61,896	71,815
관세					
세수총계	622,245	816,386	680,118	669,509	688,705
체납액 규모	16,862	20,953	21,337	22,058	22,814
체납액 정리 실적	1,082	1,950	1,437	1,272	1,434
고액채납자 신규공개자	21	16	16	12	33
고액채납자 신규체납세액	836	345	3,604	68	682

주: 1) 누계 체납액 (국세통계포털 2-3-8)

자료: (국세) 국세통계포털(TASIS), (관세) 관세청 제출자료

-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총액과 신규 고액채납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채납자별 체납 원인·납부능력에 대한 실태 확인 도입 및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됨.

- 이하 개정안의 실태확인 근거 신설 및 간접적 제재 도입을 각각 나누어 검토함.

나. 실태확인 근거 신설

- 개정안의 실태확인 근거를 신설하는 규정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조의2¹⁾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조문은 2025년 12월 신설되어 국세청에서 이를 근거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에 있음.
-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생계 곤란형 체납자 등)를 실시하여 유형에 따라 분납 등 납부안내, 추적조사, 경제활동 재기 지원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임.
- 관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과 유사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관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사업을 추진함.

[관세 체납관리단 운영]

연 도	사업추진 내역	배정예산	추진 성과
2025	- 실태확인원 10명 채용 - 5개팀 운영 (팀당 직원 1, 확인원 2)	기존 편성예산 집행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여비 등)	- 체납액 1.6억원 정리 (투입예산 대비 5배) - 체납자 유형분류: 고위험, 생계형, 관리불요 등

- 1)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요구안 불승인에 따른 운영 보류 (하반기에 일용임금 등 여유분을 활용하여 추진 계획 중)
2027	-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요구안 제출: (요구예산) 8억 7,100만원, (인원) 실태확인원 32명 8팀(확인원 4명 1팀), (활동기간) '27.3월-12월 (10개월)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기반으로 정리

-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시범운영에서 관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와 같은 실태확인에 대한 근거규정의 부재로 「국세징수법」 제37조²⁾에 따라 공무원과 동행하는 참여자 역할로서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거주지·차량보유·근로현황 등의 실태와 납부 의사·계획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 현황 파악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령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실태확인 수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실태확인원의 권한·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재정경제부에서는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명확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입장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관세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자에 대한 수색, 강제징수 등의

2)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일괄적인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 채납자의 납부 능력 및 의사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태확인을 기반으로 자진납부 유도, 은닉재산 파악 등을 통해 채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채납액 해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관세 채납관리단은 단순히 채납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태확인을 통해 파악된 채납자별 상황 및 유형에 따라 필요시 복지 연계 및 분할납부 수단을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및 추가 지원을 통해 채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장기적인 채납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셋째, 현재 「국세징수법」 등을 근거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관세 채납관리단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관세 채납관리단은 「관세법」 제25조³⁾, 「국세징수법」 제37조⁴⁾ 등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 1명에 채납관리단 2명이 동행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국세징수법」 조문은 세무공무원의 수색 또는 검사 시에 그 대상자 등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수색 또는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채납관리단 운영의 정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정안에 따라 명

3)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4)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관리의 기반이 될 수 있음.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제재 도입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압류 및 매각 등 강제징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으로써 현행 「관세법」에 규정된 제재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규정(「관세법」)]

구 분	조 문	내 용
현행법		
체납자료 제공	제44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요구에 따라 체납액 500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
명단 공개	제116조의2	체납액 2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명단 등 관보 게재, 정보통신망 게시
감치	제116조의4	체납액 2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30일 이내 범위 감치
출국금지	제116조의5	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출국금지·출국정지
개정안		
소액면세 배제	안 제116조의7 제1항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인 소액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제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안 제116조의7 제2항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또는 발급된 개인 통관고유부호 말소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	안 제116조의7 제3항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체납자 명단 통보,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안 제116조의7 제4항	체납자에 대한 탁송품의 수입신고 생략 미적용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체납자료 제공, 명단 공개, 감치 등 「관세법」과 유사한 제재수단

과 함께 관허사업에 관한 허가 제한 등의 추가 제재수단을 규정함.

□ 개정안과 같이 국세, 지방세, 관세의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관세법」상 특례 배제 등 제재 강화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박성훈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박성훈의원 발의안은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소액면세와 탁송품 특별통관을 의무적으로 미적용하도록 규정한 반면, 본 개정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으로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 비교]

제재 사항	박성훈 발의안	본 개정안	비 고
소액면세 배제	○ 안 제116조의7①	○ 좌동	박성훈안은 의무규정 본 개정안은 재량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말소	○ 안 제116조의7②	○ 좌동	재량규정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	○ 안 제116조의7③	○ 좌동	재량규정
탁송품 특별통관 미적용	○ 안 제116조의7④	○ 좌동	박성훈안은 의무규정 본 개정안은 재량규정
제재의 적용 해제 시점 명시	X -	○ 안 제116조의7⑤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제외 시 제재 적용 제외

□ 재정경제부는 고액·상습채납자의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에 더하여 면세 배제 등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는 신중 입장임.

또한 일반적으로 채납은 징수의 대상이므로 새로운 과세연도나 과

5) 의안번호 16973, 발의일자 2026.2.24.

세물품에 대한 공제·감면을 원천 배제하는 입법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세청에서는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함.⁶⁾

□ 고액·상습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집행을 위한 간접 강제수단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또한,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자가 소액면세 등 적용으로 세금 면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존재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관세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관세가 아닌 국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관세법」상 혜택을 제한하는 제재 규정이 적절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세 전반의 차원에서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지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규율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필

6)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세외수입 체납에 고강도 제재 등 특단 대책 추진」, 2026.2.23.

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현재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⁷⁾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시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국세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세법」상 제재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법상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재정경제부도 국세,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체계상 각 개별법에서 세관장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제공, 면세 배제 요청 등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둘째,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서 면세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소액면세 대상⁸⁾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⁹⁾ 또는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 등으

7)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6조의7(고액·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

로서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의 것¹⁰⁾ 등을 포함함.

한편, 통관고유부호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수출입 신고 시 수령자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부호로, 개인의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이용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함.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소액면세의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제한·말소, 보세판매장 이용 제한 등의 행정제제는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나 면세점 이용 등에 대한 편의사항 배제를 통해 개인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채납액 납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인터넷 직구 또는 면세점

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0) 「관세법」 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 등으로 쉽게 제재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제재의 실효성이
나 법률 개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셋째,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선, 소액면세, 탁송품 특별통관¹¹⁾ 등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 이를 관세 등의 체납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제도의 입법목적과 맞지 않고 실
무적으로 세관당국의 행정 처리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음. 다만,
관세청에서는 소액면세 배제에 따른 세금 징수에 추가되는 행정비
용이 크지 않고, 탁송품 특별통관 적용 제외에 따른 수입신고 처리
시 대부분 자동수리로 처리되어 행정비용 발생 수준은 미미하다는
설명임.

다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를 요청할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영업의 자

11) 탁송품 특별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등의 탁송품 수입 시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임.

「관세법」 제2조(정의)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신설하는 제재의 적용 여부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맡기고 있는데 세관별로 다른 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제재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
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